

국가연구개발사업,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+
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-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



요지 - 기존 '연구비 용도외 사용'을 실수·부주의에 의한 '연구비 부정정집행'과 악의적인
'연구비 부정집행'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

1. 연구비 부적정집행 -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·부주의로 인한

증빙서류 미비,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,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

2. 연구비 부정집행 - 서류조작, 업체와 담합,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

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,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

우

3.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-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(환수와 구별됨, 정산)하되,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

4. 연구비 부정집행 -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(정산)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환수 처분, 참여제한, 제재부과금 처분 등 제재조치 대상, 추가로 참여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-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(과제당 최대 5년)을 합산하도록 통일(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) -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 가능

제재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해당부분

5.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- (1)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,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

별표2의2 ('2.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')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
진행해야 함

(2)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
있음

(3) (일시)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, 전용횟수(적발횟수) 또는 피해회
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- (일시)전용이란 적
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
라,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- 여기서 말하는 '적발하였을
때'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, 수사기관,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
지,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의 사용 사
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

(4)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

- A.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
- B.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
- C.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,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
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
- D.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계약분쟁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